

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16. 제천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07. 10. 16.
 다. 상정일자 : 2007. 10. 22.(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토지정보팀장 박해훈)

가. 제안사유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설치·유지관리·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·사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
- 「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는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·고시내용(안 제3조 ~ 제5조)
- 자체 제작·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(안 제6조 ~ 제8조)
-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(안 제9조 ~ 제10조)
-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 관한사항 등(안 제11조 ~ 제14조)
-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제18조)
-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(안 제19조 ~ 제21조)
-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및 새주소위원회 등(안 제22조 ~ 제31조)

3. 검토의견

- 주소만으로 누구나 찾기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기

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마련된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
○ 2007. 8.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충청북도로 시달되고 2007. 8. 13일 시에 관련공문이 접수되어 2007. 9. 20~10. 1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기관·단체·개인 등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.

○ 우리시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. 31까지 3년3개월간 1,292개 노선과 23,914개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 14억 3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.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상정한 안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○ 조례 내용을 보면 도로명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도로의 위탁관리 및 광고가 핵심요소인 바,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 시행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박성하의원)

- 예 알겠습니다.(토지정보팀장 박해훈)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